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2019. 5. 28.

정부는 2020년 7월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우선관리지역*과 국·공유지 등을 포함해 최대 220km²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대책(2018. 4.)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70%까지 확대하며,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도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이 짧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하는 등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정부는 해당 제도 개선과 토지소유자 부담의 최소화를 통해 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신규 대책(2019. 5.)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90km²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벌여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조성에 필요한 심의·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공원 종류, 공원조성 주체 등 공원조성 방식의 다양화를 꾀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도를 반영해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공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시상하는 등 공원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 의지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 * 공원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
- **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 시 주의단계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
- ***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기대효과

자료: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2019),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 5월 28일자 보도자료.